경제혁신 3개년 계획 |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 | 대한민국 제도혁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 | 희망의 새시대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 | 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2월 14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4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2. 13(월)	담당부서	에너지기술과
담당과장	나성화 과장(044-203-4540)	담 당 자	박성일 사무관(044-203-4543)

에너지 신기술 실증연구에 올해 1,000억 원 투자

- **스마트그리드, 신재생, ESS, 스마트공장 등의 실증연구에 신규투자 집중**
- **실증연구 맞춤형 규정으로 연구현장 규제·애로사항 해소**

□ 정부가 **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에너지기술 분야에 올해 1,000억 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**한다.

○ 또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**『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』**을 제정하고 **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**도 마련한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2월 14일(화) 산학연 연구개발(R&D)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**「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」을 발표**했다. (*별첨 간담회 개요 참조)

◇ 추진배경

□ 에너지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**발전소나 송배전망 등 전력·에너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**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.

□ **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 실증연구는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 형으로 소형화 되는 등 침체기**를 겪고 있어

* 실증연구 투자규모(총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대비 비중) / 과제수
: '12) 1,204억원(13.7%) / 19개 → '16) 760억 원(10.9%) / 46개

○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, 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해 **에너지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**하고자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.

◇ 주요내용

□ **(투자확대)** 우선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지난해보다 240억 원이 늘어난 **1,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**('16: 760억원→'17: 1,000억원) 한다.

○ **스마트그리드,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신규투자를 집중**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.

□ **(규정·지원조직)** 실증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**「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」을 제정**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.

○ **실증연구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**히 하고, 시설·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**인건비 규제*를 적용하지 않기**로 했다.

* 인적자본 투자확대 취지로 총사업비의 40% 수준의 인건비 의무비중 요구

○ 부지변경,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**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,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**한다.

○ 또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**수입금을 해당 연구개발(R&D)사업에 재투자**하거나, **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**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.

○ 아울러 연구개발(R&D)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, 지역민원 대응,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**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**도 마련한다.

□ **(전략로드맵)**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 달성도, 미래 투자 방향을 담은 **'실증연구 전략 로드맵'**도 수립한다.

○ 전문가 자문그룹 및 온라인 수요조사('17.1분기)를 통해 **중·대형 융합 실증과제 수요를 발굴**해 이행안(로드맵)에 반영할 계획이다.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2-14 09:35:47

□ **(실증사이트) 국내외 실증자원의 효율적 연계·활용**을 통해 실증연구의 핵심요소인 실증사이트(부지, 수용가) 확보방안도 다변화를 꾀한다.

○ **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국내 시험시설***을 **정부과제의 시험대(테스트베드)**로 **적극 활용**하는 한편,

* (한전) 고창전력시험센터/나주신기술실증센터, (남동발전) 영동화력 테스트베드

○ 올해부터는 **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실증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사전 타당성조사*를 수행**하는 등 해외실증의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.

* '17.2월 공고 예정(15억원 규모)

□ **정만기 산업부 차관**은 이날 간담회에서 "**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**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적(**트랙레코드: Track Record)* 확보가 필수적**"이라며,

* 개발품이 실제환경에서 운용되어 주기적으로 축적된 실적

○ "**시장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형 대규모 실증사업**을 앞으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, 자율주행차, 스마트 시티 등 **여타 산업 분야로 확대**하겠다."라고 강조했다.

※ 별첨: 전문가 간담회 개요
에너지기술 실증연구 규정 제·개정 주요내용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나성화 과장(☎ 044-203-4540) 또는 박성일 사무관(☎ 044-203-45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1 전문가 간담회 개최개요

□ 간담회 개요

○ **일시/장소** : '17.2.14(화) 08:00~09:20, 한전 남서울본부 5층 대회의실

○ **참석자** : 15명 내외

- (정부) 1차관(주재), 산업기술정책국장, 에너지기술과장
- (민간) 에너지기술 R&D 수행기업, 대학, 출연연 등
- (유관기관) 전략기획단 에너지MD, 에너지기술평가원장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**안건** :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

□ 세부 진행계획

시 간('80)		내 용	비 고
08:00~08:05	'5	인사 말씀	1차관
08:05~08:25	'20	안건 발표	에너지기술과장
08:25~09:15	'50	토 의	참석자 전원
09:15~09:20	'5	회의 마무리	차관님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2-14 09:35:47

□ 민간 및 유관기관 참석자

성 명	소속기관	직위
유석현	두산중공업	기술연구원장(부사장)
최 준	LS 산전	스마트에너지사업부장 (상무)
최중인	벽산파워	대표이사
박진섭	서울에너지공사	사장
김동섭	서부발전	기술본부장
송일근	한전전력연구원	부원장
정 헌	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	부원장
김태유	서울대학교	교수
허종철	제주대학교	교수
황진택	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	원장
박진호	전략기획단	에너지MD

첨부2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규정 제·개정 주요내용

항 목	주요 내용	제·개정 대상
① 실증 R&D 범위(유형)	☞ 실증연구의 **개념·유형 명시 및 지원 목적 차별화** ▪ (개념) 실제 환경, 일정기간 이상의 운전,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 ▪ (유형) 인프라형, 제품/시스템형	**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** (제정)
② 실증R&D 평가기준	○ 기술개발 과제의 선정평가 기준은 실증연구의 특성 미포함 * 세계 최고 수준의 단위기술 및 우수특허 확보 ☞ **기술인증 및 장기간 운영 등의 실증 특성을 반영**한 별도의 평가 기준 마련	
③ 과제 수행기간의 연장	○ 부지변경, 설비구축 지연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수행기간 연장이 빈번 ☞ **수행기간 연장확대 (6개월→1년 이상)**	
④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	○ 실증설비의 처분 또는 他용도 활용 시에 대한 처리 절차 부재 ☞ **실증설비의 활용성 확대**를 위한 관리 및 처분 규정 마련	
⑤ 수입(익)금 관리 및 사용	○ 발전, 시스템 운영 및 부산물 등의 판매로 수입(익)금 발생 ☞ 실증설비 운영·관리 및 사업성과 확산 등의 **수입(익)금 사용의 가이드 제시**	
⑥ 기타 사항	☞ 공통운영 요령, 부속요령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준용	
⑦ 협약의 변경	○ 실증설비의 이전 설치·운영 시 처리 절차의 부재 ☞ 기반조성 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**전담기관 승인을 통해 실증설비 이전을 허용**	**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** (일부개정)
⑧ 제재기준	○ 실증설비의 임의처분,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조치 근거 부재 ☞ **기반조성 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제재근거 마련**	
⑨ 실증연구 지침 근거	☞ **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운영근거 마련**	
⑩ 인건비 의무비중	○ 총사업비 대비 40% 수준의 인건비 의무비중 준수 요구 ☞ 실증연구에 대해 적용 제외	**인건비 가이드라인**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2-14 09:35:47